|  |  |  |
| --- | --- | --- |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리방법**  　　 공업과 정보화부,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해관총서, 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32호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은 이미 공업과 정보화부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해관총서, 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동의를 거쳐 발표하며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2월 28일 발표한 "전자 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원 정보산업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질검총국, 원 환보총국령 제39호) 은 동시에 폐지한다.  공업과 정보화부 부장：먀오웨이(苗圩)  발전개혁위원회 주임：쉬야오스(徐绍史)  과학기술부 부장：완강(万钢)  재정부 부장：러우지웨이(楼继伟)  환경보호부 부장：천지닝(陈吉宁)  상무부 부장：가오후청(高虎城)  해관총서 서장：위광저우(于广洲)  질검총국 국장：즈수핑(支树平)  2016년 1월6일  제1장 총칙  제1조 전기전자제품 폐기후 환경에 대한 오염을 통제 및 감소하고 전기전자산업의 청정 생산 및 자원 종합이용을 촉진하며 환경 및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관리조례" 등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한 아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전류 또는 전자기장 형성, 전송, 측량을 목적으로 하는 직류 1500볼트,교류 1000볼트를 넘지 않는 정격 전압으로 사용되도록 한 기계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그중 전기에너지 생산, 전송, 변환 등 설비는 제외한다.  (2) 전기전자제품 오염은 전기전자제품 중 포함되는 유해물질이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을 초과하여 환경, 자원, 인류 건강 및 생명, 재산 안전을 파괴,손상, 낭비하거나 기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3)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전기전자제품 오염을 감소 및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아래 조치들을 뜻한다.  ①설계, 생산 과정에서 설계방안 변경, 공정 프로세스 변경, 원재료 교체, 생산방식 혁신 등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사용 제한하는 기술 조치  ②설계, 생산, 판매 및 수입 과정에서 유해물질 명칭 및 함유량을 표기하고 전기전자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표기하는 등 조치  ③판매과정에서 구매 채널을 엄격히 통제하여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련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거부  ④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련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  ⑤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련 조치  (4)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목록(이하 관리목록) 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 실시를 위해 제정한 목록으로 전기전자제품 품목, 사용 제한 유해물질 종류, 사용제한 시간 및 예외 적용 등 내용을 포함한다.  (5) 유해물질이란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아래 물질을 말한다.  ① 납 및 납 화합물  ② 수은 및 수은 화합물  ③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④ 6가크롬 화합물  ⑤ PBB  ⑥ PBDE  ⑦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유해물질  (6) 전기전자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사용자가 제품 설명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시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누출 또는 돌변이 발생하지 않으며 심각한 환경오염 또는 인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 공업과 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은 각자 직책 범위내에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진행한다.  제5조 공업과 정보화부는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유리한 조치를 제정하고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제6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과 정보화, 발전개혁, 과학기술, 재정, 환경보호, 상무, 해관, 질검 등 주관부서는 각자 직책 범위내에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서는 솔선수범하여 성급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업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본 행정구역내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업무 중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제7조 국가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련 과학 연구, 기술개발, 글로벌 협력을 장려 및 지원해야 하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대체 및 감소화 등 기술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제8조 공업과 정보화부,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는 본 방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표창 및 장려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서 및 기타 부서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업무 및 관련 업무에서 큰 성과를 거둔 조직 및 개인에 대해 표창 및 장려를 해야 한다.  제2장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제9조 전기전자제품 설계자는 전기전자제품 설계 시 강제적 표준 및 법률, 행정법규 및 제도가 규정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준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공정 요구를 만족시키는 전제하에서 응당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에 따라 무해 또는 저해 (低害), 분해하기 쉽고 재활용이 가능한 등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제10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는 전기전자제품 생산 시 강제적 표준 및 법률, 행정법규 및 제도가 규정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준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에 따라 자원 사용율이 높고 재활용 처리가 용이하며 환경보호에 유리한 재료,기술, 공정 등을 활용해야 하며 유해물질이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도태시켜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는 본 방법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을 출하 및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입한 전기전자제품은 강제적 표준 및 법률, 행정법규 및 제도가 규정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준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응당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법에 따라 수입산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세관 검사 및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세관에서는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발급한 “수입화물통관증서”를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수입업체는 전기전자제품 포장물 제작 및 사용 시 강제적 표준 및 법률, 행정법규 및 제도가 규정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준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무해, 분해하기 쉽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포장물 관련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수입업체는 응당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라벨 관련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따라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기전자제품중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해 표기해야 하며 유해물질 명칭, 함유량, 유해물질이 함유된 부속품 및 제품 재활용 여부, 취급 부주의 시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제품 체적, 모양, 표면 재질 및 기능 제한 등으로 제품에 표기할 수 없을 경우 응당 제품 설명에 표기해야 한다.  제14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수입업체는 응당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라벨 관련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따라 생산 및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에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제품 체적, 모양, 표면 재질 및 기능 제한 등으로 제품에 표기할 수 없을 경우 응당 제품 설명에 표기해야 한다.  제15조 전기전자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확정한다. 유관 산업조직은 기술발전 수준에 따라 제품 품목, 확정 방법, 구체 기한 등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전자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 관련 지도의견을 제정한다.  공업과 정보화부는 유관 산업조직이 전기전자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 관련 지도의견을 제정하여 공업과 정보화부에 송부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6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체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을 위반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목록 관리 방식을 활용한다. 공업과 정보화부는 산업 발전의 실제 상황에 따라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등과 논의하여 관리목록을 작성, 변경및 발표한다.  제18조 국가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합격평가제도를 구축한다. 관리목록에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은 응당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서 규정한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합격평가제도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공업과 정보화부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업무 요구에 따라 국가 인증인가감독주관부서에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제한 합격평가제도 구축 관련 건의를제출한다. 국가인증인가감독주관부서는 공업과 정보화부와 협력하여 합격평가제도를 제정,발표 및 실시한다.공업과 정보화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재정부 등 부서와 협력하여 합격평가결과 인가 제도를 구축한다.  제3장 벌칙  제19조 본 방법을 위반하는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무부,세관,질검 등 부서는 각자 직책 범위내에서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1)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가 본 방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고사용한 재료,기술,공정이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제한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을 위반하였으며 본 방법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전기전자제품이 출하 및 판매된 경우  (2) 전기전자제품 수입업체가 본 방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한 전기전자제품이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을 위반한 경우  (3)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수입업체가 본 방법 제12조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 및 사용한 전기전자제품 포장물이 포장물 사용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을 위반한 경우  (4) 전기전자제품생산업체,수입업체가 본 방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고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 명칭, 함유량, 유해물질이 함유된 부속품 및 제품 재활용 여부,취급 부주의 시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5) 전기전자제품생산업체,수입업체가 본 방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고 전기전자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6)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체가 본 방법 제16조 규정을 위반하고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을 위반한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한 경우  (7)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판매업체,수입업체가 본 방법 제17조 규정을 위반하고 목록관리에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실시일자 이후 유해물질 함유량이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 제한량을 초과한 전기전자제품을 생산, 판매,수입한 경우  제20조 관련 부서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용인하거나 은닉한 경우,또는 본 방법을 위반한 당사자가 조사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한다.  제4장 부칙  제21조 그 어떤 조직 및 개인은 본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관 부서에 투서 및 신고할 수 있다.  제22조 본 방법은 공업과 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에해석 책임이 있다.  제23조 본 방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2월 28일에 공표한 "전자 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원 정보산업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질검총국, 원 환보총국령 제39호) 은 동시에 폐지한다. |  | **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  **管理办法**  工业和信息化部、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科学技术部、财政部、环境保护部、商务部、海关总署、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第32号  《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办法》已经工业和信息化部部务会议审议通过，并经发展改革委、科技部、财政部、环境保护部、商务部、海关总署、质检总局同意，现予公布，自2016年7月1日起施行。2006年2月28日公布的《电子信息产品污染控制管理办法》（原信息产业部、发展改革委、商务部、海关总署、工商总局、质检总局、原环保总局令第39号）同时废止。  工业和信息化部部长：苗圩  发展改革委主任：徐绍史  科技部部长：万钢  财政部部长：楼继伟  环境保护部部长：陈吉宁  商务部部长：高虎城  海关总署署长：于广洲  质检总局局长：支树平  2016年1月6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控制和减少电器电子产品废弃后对环境造成的污染，促进电器电子行业清洁生产和资源综合利用，鼓励绿色消费，保护环境和人体健康，根据《中华人民共和国清洁生产促进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废弃电器电子产品回收处理管理条例》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生产、销售和进口电器电子产品，适用本办法。  第三条 本办法下列术语的含义是：  （一）电器电子产品，是指依靠电流或电磁场工作或者以产生、传输和测量电流和电磁场为目的，额定工作电压为直流电不超过1500伏特、交流电不超过1000伏特的设备及配套产品。其中涉及电能生产、传输和分配的设备除外。  （二）电器电子产品污染，是指电器电子产品中含有的有害物质超过国家标准或行业标准，对环境、资源、人类身体健康以及生命、财产安全造成破坏、损害、浪费或其他不良影响。  （三）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是指为减少或消除电器电子产品污染而采取的下列措施：  1．设计、生产过程中，通过改变设计方案、调整工艺流程、更换使用材料、革新制造方式等限制使用电器电子产品中的有害物质的技术措施；  2．设计、生产、销售以及进口过程中，标注有害物质名称及其含量，标注电器电子产品环保使用期限等措施；  3．销售过程中，严格进货渠道，拒绝销售不符合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国家标准或行业标准的电器电子产品；  4．禁止进口不符合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国家标准或行业标准的电器电子产品；  5．国家规定的其他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的措施。  （四）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达标管理目录（以下简称达标管理目录），是为实施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管理而制定的目录，包括电器电子产品类目、限制使用的有害物质种类、限制使用时间及例外要求等内容。  （五）有害物质，是指电器电子产品中含有的下列物质：  1．铅及其化合物；  2．汞及其化合物；  3．镉及其化合物；  4．六价铬化合物；  5．多溴联苯（PBB）；  6．多溴二苯醚（PBDE）；  7．国家规定的其他有害物质。  （六）电器电子产品环保使用期限，是指用户按照产品说明正常使用时，电器电子产品中含有的有害物质不会发生外泄或突变，不会对环境造成严重污染或对其人身、财产造成严重损害的期限。  第四条 工业和信息化部、发展改革委、科技部、财政部、环境保护部、商务部、海关总署、质检总局在各自的职责范围内对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进行管理和监督。  第五条 工业和信息化部会同国务院有关主管部门制定有利于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的措施，落实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的有关规定。  第六条 省、自治区、直辖市工业和信息化、发展改革、科技、财政、环境保护、商务、海关、质检等主管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对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实施监督管理。  省、自治区、直辖市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负责牵头建立省级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工作协调机制，负责协调解决本行政区域内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工作中的重大事项及问题。  第七条 国家鼓励、支持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的科学研究、技术开发和国际合作，积极推广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替代与减量化等技术、装备。  第八条 工业和信息化部、国务院有关主管部门对积极开发、研制严于本办法规定的电器电子产品的组织和个人，可以给予表扬或奖励。  省、自治区、直辖市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和其他相关主管部门对在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工作以及相关活动中做出显著成绩的组织和个人，可以给予表扬或奖励。  第二章 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  第九条 电器电子产品设计者在设计电器电子产品时，不得违反强制性标准或法律、行政法规和规章规定必须执行的标准，在满足工艺要求的前提下应当按照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国家标准或行业标准，采用无害或低害、易于降解、便于回收利用等方案。  第十条 电器电子产品生产者在生产电器电子产品时，不得违反强制性标准或法律、行政法规和规章规定必须执行的标准，应当按照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国家标准或行业标准，采用资源利用率高、易回收处理、有利于环境保护的材料、技术和工艺，限制或者淘汰有害物质在产品中的使用。  电器电子产品生产者不得将不符合本办法要求的电器电子产品出厂、销售。  第十一条 进口的电器电子产品不得违反强制性标准或法律、行政法规和规章规定必须执行的标准，应当符合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国家标准或行业标准。  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法对进口的电器电子产品实施口岸验证和法定检验。海关验核出入境检验检疫机构签发的《入境货物通关单》并按规定办理通关手续。  第十二条 电器电子产品生产者、进口者制作、使用电器电子产品包装物时，不得违反强制性标准或法律、行政法规和规章规定必须执行的标准，应当采用无害、易于降解和便于回收利用的材料，遵守包装物使用的国家标准或行业标准。  第十三条 电器电子产品生产者、进口者应当按照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的国家标准或行业标准，对其投放市场的电器电子产品中含有的有害物质进行标注，标明有害物质的名称、含量、所在部件及其产品可否回收利用，以及不当利用或者处置可能会对环境和人类健康造成影响的信息等；由于产品体积、形状、表面材质或功能的限制不能在产品上标注的，应当在产品说明中注明。  第十四条 电器电子产品生产者、进口者应当按照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标识的国家标准或行业标准，在其生产或进口的电器电子产品上标注环保使用期限；由于产品体积、形状、表面材质或功能的限制不能在产品上标注的，应当在产品说明中注明。  第十五条 电器电子产品的环保使用期限由电器电子产品的生产者或进口者自行确定。相关行业组织可根据技术发展水平，制定包含产品类目、确定方法、具体期限等内容的相关电器电子产品环保使用期限的指导意见。  工业和信息化部鼓励相关行业组织将制定的电器电子产品环保使用期限的指导意见报送工业和信息化部。  第十六条 电器电子产品销售者不得销售违反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国家标准或行业标准的电器电子产品。  第十七条 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采取目录管理的方式。工业和信息化部根据产业发展的实际状况，商发展改革委、科技部、财政部、环境保护部、商务部、海关总署、质检总局编制、调整、发布达标管理目录。  第十八条 国家建立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合格评定制度。纳入达标管理目录的电器电子产品，应当符合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限量要求的国家标准或行业标准，按照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合格评定制度进行管理。  工业和信息化部根据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工作整体安排，向国家认证认可监督主管部门提出建立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合格评定制度的建议。国家认证认可监督主管部门依据职能会同工业和信息化部制定、发布并组织实施合格评定制度。工业和信息化部根据实际情况，会同财政部等部门对合格评定结果建立相关采信机制。  第三章 罚 则  第十九条 违反本办法，有下列情形之一的，由商务、海关、质检等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依法予以处罚：  （一）电器电子产品生产者违反本办法第十条的规定，所采用的材料、技术和工艺违反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国家标准或行业标准的，以及将不符合本办法要求的电器电子产品出厂、销售的；  （二）电器电子产品进口者违反本办法第十一条的规定，进口的电器电子产品违反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国家标准或行业标准的；  （三）电器电子产品生产者、进口者违反本办法第十二条的规定，制作或使用的电器电子产品包装物违反包装物使用国家标准或行业标准的；  （四）电器电子产品生产者、进口者违反本办法第十三条的规定，未标注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的名称、含量、所在部件及其产品可否回收利用，以及不当利用或者处置可能会对环境和人类健康造成影响等信息的；  （五）电器电子产品生产者、进口者违反本办法第十四条的规定，未标注电器电子产品环保使用期限的；  （六）电器电子产品销售者违反本办法第十六条的规定，销售违反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国家标准或行业标准的电器电子产品的；  （七）电器电子产品生产者、销售者和进口者违反本办法第十七条的规定，自列入达标管理目录的电器电子产品限制使用有害物质的实施之日起，生产、销售或进口有害物质含量超过电器电子产品有害物质限制使用限量的相关国家标准或行业标准的电器电子产品的。  第二十条 有关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徇私舞弊，纵容、包庇违反本办法规定的行为的，或者帮助违反本办法规定的当事人逃避查处的，依法给予行政处分。  第四章 附 则  第二十一条 任何组织和个人有权对违反本办法规定的行为向有关部门投诉、举报。  第二十二条 本办法由工业和信息化部商发展改革委、科技部、财政部、环境保护部、商务部、海关总署、质检总局解释。  第二十三条 本办法自2016年7月1日起施行。2006年2月28日公布的《电子信息产品污染控制管理办法》（原信息产业部、发展改革委、商务部、海关总署、工商总局、质检总局、原环保总局令第39号）同时废止。 |